



동물용 항균물질의 규제와 내성균대책을 둘러싼 국내외적 동향(Ⅰ)

| 이인호 / 농수축산신문 동물약품전담 리포터

I. 서론

항생물질은 인류가 20세기에 남긴 위대한 유산의 하나로서, 세균성 전염병 극복의 대표 약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를 괴롭혀 왔던 급성전염병은 격감되어, 항생물질은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편 항균물질(항생물질+합성 항균제)이 동물분야에 사용되게 된지 반세기가 경과하였다. 그간에 항균물질은 주로 동물의 안전 축산물 공급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에, 동물에 항균성 물질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식용동물에서의 약제내성균의 출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다.

최근, 신문이나 TV 등의 메스미디어를 통하여 식용동물유래약제내성균 문제가 자주 보도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치료약 사용의 제한을 필요로 되는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나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과 같은 약제내성균에 의한 사람에의 전염병이나 병원내 감염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는 그 원인의 하나로서 식용동물에 항균성물질을 치료나 성장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구미(歐美) 각국의 많은 학술단체가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공식적인 보고서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 어느 경우나 그 가능성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식용동물에 사용되어지는 항균제가 사람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명백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표1).

미국동물약사협회(AHI), Fact Sheet 4/22/98에 추가(JVM Vol.52, No4, 1999)

표 1. 가축에 있어서 항생물질/항균제 내성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주요한 조사와 그 요약

영국 : 스완보고서(1969년): Swann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광범위 항생물질인 테트라싸이클린계는 사람의 의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축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
미국 : 뉴욕 과학 아카데미(1970년): 광범위하고 상세히 조사하였지만, 가축에 있어서 준 치료양의 항생물질의 사용과 인간의 건강상의 문제간에 결정적인 관련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국 : 식품의약품청(FDA) 특별위원회(1972년): 8:7로, 사료중에 항생물질을 첨가해서 사용하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 FDA(1977년): 식품안전성 자문위원회의 신청으로, FDA는 페니실린의 사료첨가금지와 테트라싸이클린의 사료 첨가 제한을 제안하였지만, 의회는 이 제안을 이유 있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치를 실시 하지 않게 조치해,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
미국 :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 1980년): 준 치료량의 사용문제를 문헌과 자료로서 철저히 검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증명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축산에 있어서 항균제의 준 치료적 사용과 사람의 질병을 관련지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 국립위생연구소(NIH, 1987년): 항생물질내성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조사. 가축에 있어서 사용과의 관련은 결론 내리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가축에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에, 사람의 항생물질 내성이 많았다. 가축에서의 사용이 사람의 내성과 관련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 의학연구소(IOM, 1988년): NAS의 일부분인 IOM이, FDA의 요청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 FDA는 자료의 재조사보다, 오히려 사료에 항생물질을 첨가 사용하는 것의 위험평가를 의뢰. IOM은 기존의 정보가 주로 상황증거, 때로는 애매, 때로는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미국 : 기술평가사무국(OTA, 1995년): 상기(上記)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OTA는 문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미국 : FDA합동자문위원회(1994년): 동물용 플루오퀴놀론(FQ)제의 승인에 대해서 FDA를 자문한 위원회는 FQ가 동물의 몇 가지 감염증을 치료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결론. FQ제 승인은 치료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신중한 것이었다.
미국 : 국립연구심의회(NRC, 1998년): 가축에서의 항생물질의 투여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사료에 혼합하는 정도의 저 농도로 내성이 생기는지도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신문 등에 발표된 식용동물이나 사람에 있어서 항균물질의 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의료에 있어서의 약제내성균 문제의 원인은 동물분야에서 항균물질 남용에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의축산분야에서의 내성문제는 동물약품 사용자(농가)의 입장에서는 가축의 세균성 질병 발생 시에 적절한 치료제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항생물질 외에 고가의 새로운 항생물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치료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동물약품 개발회사 입장에서도 개발한 약제의 치료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기존에 개발한 약제의 사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새로운 약제의 개발을 위한 개발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항균물질을 사용하면 약제내성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많은 역학정보나 실험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적정하게 사용되어진다면 약제내성균의 출현을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항균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약제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균성물질의 사용현장에서의 오용이나 과잉사용을 어떻게 억제하는 가에 그 문제가 달려있다.

동물에서의 내성이 직, 간접적으로 사람의 내성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실정과 내성균의 발생과 전달 및 축산물중 잔류를 비롯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여러가지 이점 때문에(표 2), 비록 그 사용량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표3~5), 규제정책을 선호하는 EU국가와는 달리 관리정책을 선호하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자국의 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EU국가와는 다르게, 성장촉진 목적으로 항균성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치료용 항균제의 승인신청 시에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의 정성적(定性的) 평가(Assessment)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표6). 동물에 내성균이 발생하는 위험, 식품을 통해서 사람이 동물의 내성균에 폭로되는 위험, 그 결과로서 사람에 중요한 항균제가 효과 없게

표 2. 사료첨가 항균성 성장촉진제의 이점(Benefits)

환경에 대한 이점

분뇨량이 삭감 ; 매단가스배출의 삭감(반추동물) ; 질소배설의 삭감 ; 인배설의 삭감

능력의 향상

증체중의 증가 ; 사료효율의 향상 ; 도체수량의 증가 ; 웅둔의 능력향상 ; 자돈의 생존율과 성장률의 향상 ; 우유생산의 증가 ; 양모의 성장촉진

질병의 통제

기금의 고사성장염 ; 돼지의 고사성장염 ; 돼지의 증식성장염 ; 돈적리 ; 소의 급성폐렴 ; 소·양·닭의 콕시둠증 ; 양의 톡소프라즈마증

대사장해와 발효장해의 방지

유산과산증의 감소 ; 제엽염의 감소 ; 케토시스의 감소 ; 반추동물의 고창증의 감소

기타의 이점

단백질의 절약 ; 에너지의 절약 ; 광물질 흡수의 향상 ; 더위내성의 향상 ; 면역상태의 향상 ; 자리깔집의 건조와 육계의 다리의 장애의 감소 ; 소의 분중의 파리의 생존일수 감소

AVCARE(2003) The role of enteric antibiotics in livestock production : a review of published literature로부터 인용

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제의 정도에 반영시키는 안(案)으로서, 일본에서는

이 위험평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림1).

그림 1. 미국이 신항균성 동물용의약품 승인신청자료로 제안한 정성적 위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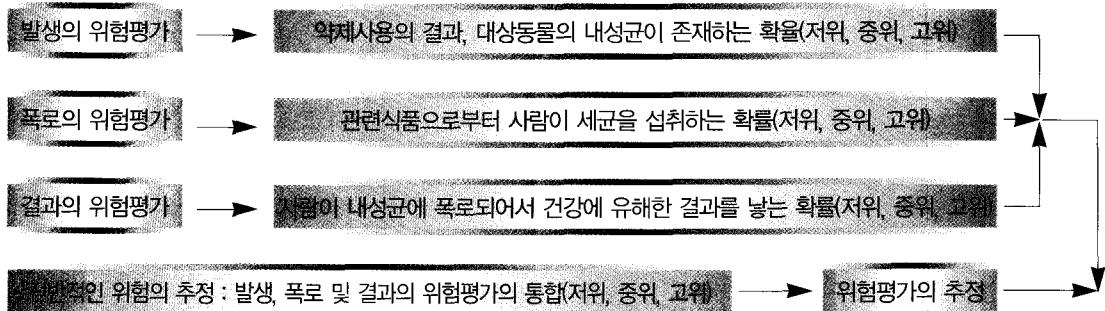


표 3. 식용과 비식용동물에서 항생물질 치료제와 성장촉진제의 판매액(1998~2000년)

	1998	1999	2000	연간 증가 / 감소
치료용 항생물질-식용물질	433	383	437 * *	14%
항생물질 성장촉진제	89	28	24	-14%
총항생물질- 식용동물	522	411	461	12%
치료용항생물질-비식용동물 *	32	37	29	-27%
총항생물질-식용 및 비식용동물	554	448	490	9.5%

* 말, 개 및 고양이

· 자료 출처 :VMD(2002년)

표 4. 식용동물에서 항생물질치료제(유효성분 등)의 판매액(1998~2000년)

치료제 계열	1998	1999	2000	연간 증가/ 감소
테트라사이클린	233	192	228	19%
트리메토프림/설폰아마이드	80	82	94	14%
베타-락탐	60	52	49	-6%
아미노클리코시드	24	20	12	-40%
마크로라이드	24	29	41	41%
플루로퀴놀론	1	1	1	0%
기타 *	11	7	11	57%
총계	433	383	436	14%

* Lincomycin, tiamulin, valnemulin, florfenicol, novobiocin, decoquinate, diclazuril.

· 자료출처 : VMD(2002년)

표 5. 식용동물에서 항생물질의 투여경로에 의한 치료용 항생물질(유효성분톤)의 판매액(1998~2000년)

분류	1998	1999	2000	연간 증가/ 감소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	362	307.5	244	-21%
주사	24	27	27	0%
음수/경구	38	40	158	395%
유방내 주입제	7	5.5	5.7	4%
기타*	2	3	1.2	-60%
총계	433	384	436	14%

* Includes aerosols, creams, ear and eye medications.

· 자료출처 : VMD(2002년)

표 6. 미국의 식용동물용 신항균성 동물용의약품이 위험평가에 관련된 규제안

승인조건 (사람의료에 있어서 중요성)	범주 1 (高位)	범주 2 (中位)	범주 3 (低位)
판매조건	Rx	Rx/VFD	Rx/VFD/OTC
승인외 사용	제한	일부제한	무제한
동물에 있어서 사용의 정도	저위	저위/중위	저위/중위/고위
승인후 잔류검사	필요	필요	경우에 따라 필요
자문위원회의 심사	필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	불필요

Rx : 처방약, VFD:수의사의 지시를 요하는 사료첨가제, OTC : 일반판매약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3년 2월에 일본 수의사회지에 발표된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의약품검사소 제2부장인 유타카 다무라(田村豊) 박사의 자료(Vol.56, P.685~691)와 2004년 6월에 일본 수의사회지에 발표된 농림수산성 동물용의약품검사소 소장인 牧江弘孝박사 (Vol.57,P.331~333)의 자료외에 2003년 12월에 월간 양돈정보에 발표된 사단법인 일본 동물용의약품협회 상무이사인 사토시 오시마(大島慧) 박사의 자료에다 본인이 최근에 국·내외에서 수집한 최신 자료와 농림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써 제공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항균성 물질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

사람의 의료(醫療)현장에서 항균성 물질의 오, 남용(誤, 濫用)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환자의 치료효율 저하와 병원 내 감염이 의료계(醫療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浮刻)되고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서 가축의 성장촉진과 사료효율 개선의 목적 등으로 계속적으로 배합사료에 첨가되고 있는 저 농도 항균성 물질의 사용 시에 필연적으로 출현(出現)하는 다약제 내성균 및 슈퍼 박테리아가 축산물 내

잔류를 통해 사람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의 가능성 제기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立證)을 두고 의료계와 수의업계(獸醫業界)의 이견(異見)이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축의 증체(增體) 및 사료효율의 향상이나 질병예방의 목적으로 배합사료에 관례적(慣例的)으로 첨가되어온 항균성 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의 사용에 대해 국내외에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물전용이 아닌 테트라싸이클린(TC)을 비롯한 인수공용(仁獸共用)의 항균성물질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EU와 일본에서 계속 진행됨에 따라, 국내 업계에서도 이미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서 농림부 가축방역과의 향후 정책적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약사법 제 72조의 6 제2항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3월 25일 국립수의과학원장 고시 제2000-10호에 수록된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 의약품 품목만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FDA와 EU국가 및 일본 등에서 사용이 승인되고 있는 성장촉진용 항균성 물질 등 54종의 동물용 의약품에 한하여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EU와 일본을 비롯한 축산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촉진용 항균성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표9).

EU의회와 위원회에서는 미국 FDA와 EU의 SCAN에 의해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4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을 이미 2002년 말에 내렸다.

EU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도 규제조치를 취하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공표(公表)한 후에, 사람의 의료와 같은 계통의 성장촉진제 4종을 1999년 7월에 사용금지하고, 남은 4종(아빌라마이신, 플라보마이신, 모넨신, 살리노마이신)도 2006년 1월 1일부터 성장촉진의 목적으로는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콕시듐예방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EU에 치료용 항균성물질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없다. EU전체보다 한발 앞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와 스웨덴의 예를 보면, 가축에도 사람에도 질병이 증가하고, 생산비가 높아지고,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용 항균성물질의 사용이 성장촉진제의 사용금지 이전보다 증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浮上)되고 있다(표7, 8) (그림 2, 3).

또한, 2003년부터 일본도 EU의 영향을 받아 총 29개 사료첨가용 항생물질 중에서 자국(自國)내 축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동물전용의 16성분을 제외한 인체약과 동일 또는 유사의 나머지 9성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이 신설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매달 개최되는 이 위원회의 동향은 홈페이지(<http://www8.cao.go.jp/shokuhin/>)를 통해 소개하는 투명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림 2. 덴마크에서 항생물질의 총 섭취(유효성분의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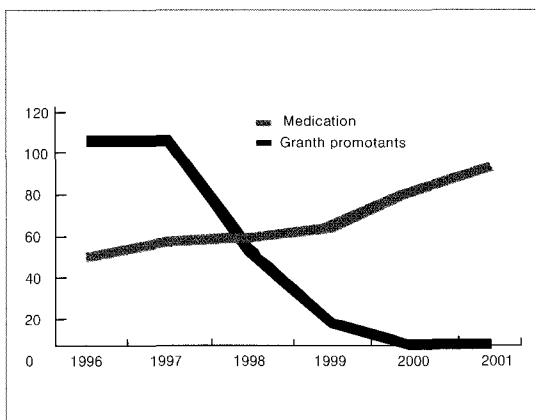


그림 3. 덴마크에서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ST)에 대한 선발된 항균제의 내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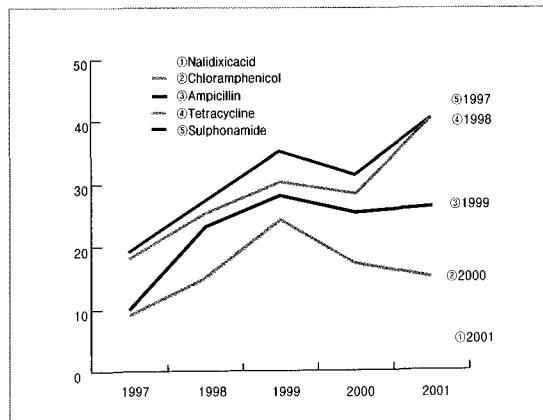


표7. 스웨덴 AB(National Corporation of Pharmacies)의 판매통계에 기초한 가축의 치료를 위한 항균성물질(유효성분 kg)의 총량(SOU, 1997 ; Odensvik, 2000)

항균성물질종류	연도					
	1980	1984	1988	1992	1996	1999
Tetracyclines	9819	12955	4691	8023	2698	2251
Chloramphenicol	47	49	35			
G-and V penicillins	3222	4786	7143	7446	8818	8692
Aminopenicillins	60	714	655	837	835	809
Other betalactam-antibiotics	9	2				245
Aminoglycosides	5274	5608	3194	2139	1164	846
Sulphonamides	6600	4325	3072	2362	2198	2403
Trimetoprim and derivatives	134	186	250	274	339	397
Macrolides and lincosamides	603	887	1205	1710	1649	1467
Fluoroquinolones				147	173	155
Pleuromutilins			124	268	1142	847
Other subsrances	961	1637	1567	1634		
Quinoxalines	6250	9900	7164	4917	1098	
Streptogramins		8800	1088	1275	525	125
Antibacterial performance enhancers	8380	700				
Total	41259	50549	30189	31043	20639	18237

표8. 덴마크에서의 식용가축의 치료에서 항생물질의 사용동향(유효성분 kg)

성분명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테트라사이클린	12,900	12,100	16,200	24,000	27,900
페니실린계(협범위)	7,200	14,300	14,700	14,800	17,100
페니실린계(광범위)	5,800	6,700	6,600	7,600	9,300
설파제+트리메토프림	4,800	7,700	6,800	7,000	7,400
설파제	2,100	1,000	1,000	1,000	800
마크로라이드+린코사미드계	7,600	7,100	8,700	11,100	14,300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7,100	7,800	7,500	10,400	11,900
기타	600	650	350	4,500	5,200
합계	48,000	57,300	61,900	80,000	94,200

자료출처 : DANMAP 2001(DVI 2002)

표 1. 가축에 있어서 항생물질/항균제 내성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주요한 조사와 그 요약

1986년	스웨덴 : 성장촉진목적의 사료첨가 항생물질 사용금지
1995년 5월	덴마크 : VRE의 원인으로서 아보파신(AVP)의 사용금지
1996년 1월	독일 : 아보파신의 사용금지
1997년 2월	일본 : 아보파신과 오리엔티신의 사료첨가제 지정취소 결정
1997년 10월	WHO 베를린 전문가회의(식용동물에 있어서 항균제의 사용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
1998년 1월	덴마크: 버어지니아마이신(VM)의 사용금지
1998년 6월	WHO 수뇌부(首腦部) 전문가회의(식용동물에 있어서 퀴놀론제의 사용과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 미칠지도 모를 영향)
1998년 9월	EU 코펜하겐 招待者회의(미생물의 위험)
1998년 10월	EU : 예방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1998년 12월	EU : 農相會議에서 人體藥과 同系統의이라는 이유로 항생물질 4종(버어지니아마이신, 스피라마이신, 타이로신, 바시트라신) 사용금지(1999년 7월부터)를 결정. 오라퀸독스와 카바독스의 사용금지(1999년 7월부터)도 결정
2001년 5월	EU : EU 科學運營委員會가 성장촉진제에 대한 일시 중지의 정당화와 남은 4제제에 대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권고.
2002년 3월	EU : EU 運營委員會가 현재 사용이 승인된 4종의 성장촉진목적의 항생물질(모넨신, 아빌라마이신, 살리노마이신, 플라보마이신) 범주(範疇)의 폐지를 포함한 신규(新規)사료첨가제 규제안(規制案)을 권고

2002년 10월	일본 : 農業資材審議會 飼料分科會 安全性部會가 현재 사용이 승인되고 있는 29종의 항균성 물질 중, 9종의 인간의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약제 내성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항균성물질 사료첨가제 (타이로신, 세데카마이신, CTC, OTC, 데스토마이신 A, 바시트라신, 콜리스틴, 베어지니아마이신, 셀파퀴노실린)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
2003년 6월	일본 : 農林水產省에서 제 8회 農業資材審議會 飼料分科會 安全性部會를 개최하여, 9종의 항균성 사료첨가제의 재평가에 대해서 2003년 7월 1일에 신설된 식품안전위원회에 위험의 평가기준을 인계함과 동시에, 현재 지정되고 있는 29품목의 전 품목에 관한 평가도 同委員會에 자문해서 판단을 내릴 방침을 결정
2003년 7월	EU : 건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위원회 의장인 David Byrne씨가 EU의 농업위원회에 의한 신규 제안 채택에 대해서 공식으로 표명(表明)
2003년 8월	WHO : 인체에 있어서, 항생물질에 대해 내성을 지니는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축에서의 항생물질의 과잉(過剩)한 사용을 삼갈 것을 경고
2006년 1월	EU : 수의사 처방 없는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료첨가 완전 금지

1969년에 영국의 가축에 생긴 내성균이 사람에 감염되기 때문에, 같은 항균성물질을 가축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스완보고서 (Swann Report)가 나왔다.

그후, 사람의 내성균은 가축에 항균성물질을 투여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이 있어,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가능성만 제기된 체 분명한 결론은 유보(留保)되고 있다.

1997년의 WHO 전문가회의에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유의(留意)해야 할 사실은 있어서, 사람의료와 동 계통(同系統)의 항균성물질을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勸告)하였다.

이미 덴마크와 스웨덴 및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국가별로 가축유래내성균 잔류검사(Monitoring)체계를 구축하여 실시 (DANMAP, JVARM 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한 8개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국가

항생제내성안전 관리사업과 같은 정책산업을 실시하여 2003년 말에 1차 년도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대회에서 인수공용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사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구실로 한 공세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유래의 항생물질 내성균이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적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또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J. Antimicrob. Chemother. 53:28-52. 2004년), 이러한 학술논문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계의 공세의 부당성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반론(反論) 증거제시를 하지 못한 체, EU와는 달리 항균성 물질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미 수의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국내 축산 현실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체, 사회적 여론에 휩쓸려 항균성 물질의 부정적인 면만을 편중(偏重)된 시각으로 주로 부각시켜 기술하거나 보도하여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에 대한 불안심리를 가동케 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행의 사료관리법 체계에서 정부가 사람의 의료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용(通用)되고 있는 항균성 물질의 신증사용의 법칙(Prudent uses)을 준수하면서 관련업계와의 마찰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일본(25종)이나 중국(20종)에 비해 배가 넘는 54종 항균성 물질의 수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뿐만 아니라, 하이그로마이신 B를 비롯해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허가를 자진 반납한 성분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동물약품업체의 품목별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동물약품 업계의 생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업계가 묵시적(默示的)으로 동의하고 있는 비고자마이신(Bicozamycin) 등을 비롯한 성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금지시켜 항균성 물질의 사용천국이라는 오명(汚名)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이에 해당되는 성분부터 1차적으로 사용금지 시켜 사용승인 품목을 30개 이하로 줄이고, 향후,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수공용의 항균성 물질을 추가 삭제 시에 관계되는 관련법규의 신속한 개정과 업계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EU나 일본과 같이 항균성 물질규제에 대한 분명한 정책일정과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공표 하여 업계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체적 동향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관련 업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전에 항균성물질의 오. 남용 방지와 안전축산물생산에 필수 전제조건인 임상수의사의 처방에의한 약품의 처방제도의 실시와 요주의약품의 도입과 같은 원칙에 대해서 수의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이 원론적으로 수의 및 동물용의약품 비전문가들이 제출한 내성과 잔류기간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사료용 항생물질을 국제적 수준인 30종 이하로 감축시키겠다고 발표한 뒤에 관련 업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항균성 물질의 신증사용과 안전축산물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선결과제인 임상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요주의약품(要注意藥品)제도의 조속한 국내 정착을 위해 기존의 관행과 매출감소를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연기에 찬성하는 생산자단체 및 일부 업계와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망하는 수의사 단체의 이견조정을 농림부가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양 단체간에 실천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전조정 노력을 함으로써 양 단체간의 마찰의 요인을 미연(未然)에 방지함과 동시에 동물 약사법을 비롯해 현실에 부합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